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6월 24일, 문대림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4.8.27.)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4.11.2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2024.1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문대림 의원)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재해피해 규모와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반면 우리 농어업 현장은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경영 여력 악화로 농어업재해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임. 농어업의 회복탄력성이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어업의 경영 안정을 보장해야 할 농어업재해대책은 재해 피해에 대한 단순 복구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어가의 온전한 회복과 재생산 역량 확보에 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내실화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농업재해 정의에 ‘이상고온’ 피해 추가

이상고온은 계절적 평균기온을 초과하는 고온 현상으로, 낮의 일최고기온이 특정 기준값을 넘으면서 발생하는 폭염과 밤의 일최저기온이 특정 기준값을 넘으면서 발생하는 열대야를 포함함.

이상고온 현상은 농작물의 생육 부진, 수량 감소, 양분 결핍, 해충

발생, 품질 저하로 이어져 농가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처럼 이상고온은 폭염을 포함하여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음. 지구온난화의 본격화로 이상고온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남을 감안하면 ‘이상고온’을 농업재해의 범주에 포함하여 농업인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하려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예방대책 마련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농업분야에서 원예작목별 기후 조건에 맞는 작물 선정,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개선, 품목별 재해 대응 매뉴얼 개발 등 대응전략 마련은 주요한 과제임.

개정안은 농어업재해의 증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그러나 대책에 포함될 사항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마목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의 주요 사항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시행규칙에 따르면, 취약성 평가는 농업·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기후의 이상 변화에 관한 사항, 농작물재배·축산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내용보다 구체화된 측면이 있음.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는 재해예방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조사이고, 재해예방의 대책이 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보조 및 지원

(실거래가 수준 및 물가상승률 고려한 지원)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관계 부처와 실거래가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정하고 있음.

보조 및 지원의 기준에 실거래가 수준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안전조정위원회 심사내용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 주철현)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조정안으로 의결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7.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